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61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김기웅 · 고동진 · 추경호
이만희 · 박충권 · 이종배
유용원 · 김석기 · 김형동
김승수 · 권영세 · 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남북관계 특성상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사유로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 한정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4조·제
25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 품(광고선전물 · 인쇄물 · 보조 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 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 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 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u><삭 제></u>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삭 제>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u>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u>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